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631호 2019. 09. 11.(수)

고 시

○ 사천시 고시 제215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----- 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사 천 시 공 보

제631호

사천시 고시 제2019-215호

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

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·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.

2019. 09. 10.

사 천 시 장

1.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

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지역·지구 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.

2.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

※ 해제근거 : 초지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

연번	초 지 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면적 (㎡)	해제면적 (㎡)	지정해제 사 유	비 고
1	경남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	산58	임야	9,905	9,905	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로서 2년이상 관리·이용되지 아니한 초지	

3. 관계도면 : 게재생략

[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(☎055-831-3779) 로 문의]

4. 이해 관계인은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 기 바랍니다.